

#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간제 근로자(속기사) 채용 공고

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기간제 근로자(속기사)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,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9일  
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

## 1.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

채용직급(분야)	채용인원	계약기간	주요업무	근무예정지
기간제근로자 (속기사)	1명	'26. 3. 23. ~'26. 8. 31.	속기 및 사무보조(비서 등)	중앙해양안전심판원 (세종특별자치시 소재)

- ▶ 이번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**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**을 알려드립니다.
- ▶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, **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의 휴직연장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**

## 2. 응시자격

※ 판단기준일: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

-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한글속기(컴퓨터)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외국인이 아닌 자)  
\* 이중국적자의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-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2008.12.31. 이전 출생자(18세 이상인 자)로서 공고일('26.1.19.) 기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(60세)에 도달하지 않은 자

### 3. 시험방법

#### 가. (1차, 서류전형)

- 응시자 제출 서류를 토대로 응시 자격·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다만,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,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

#### 나. (2차, 면접전형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, 응시자 1인당 20분 내외 개별면접 진행
- 평정요소(5개 항목)에 대하여 각각(상·중·하)로 평가

##### (면접시험 평정요소)

- ① 국가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당해 업무 관련 전문 지식과 응용능력
-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,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
#### 다.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

채용분야	최종 합격자	예비 합격자(운영기한)
기간제 근로자(속기사)	1명	1명 (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)

- 최종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(불합격 기준)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한 경우

- 최종 합격자가 채용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 합격자를 선정
-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,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,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

## 4. 전형 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채용공고 기간	'26. 2. 19.(목) ~ '26. 2. 26.(목)	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, 나라일터
원서 접수 기간	'26. 2. 24.(화) 09:00 ~ '26. 2. 26.(목) 18:00	등기우편 접수 (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	'26. 3. 5.(목)	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, 나라일터
면접전형 예정일	'26. 3. 10.(화)	
최종합격자 발표일	'26. 3. 13.(금)	개별 통보
채용 예정일	'26. 3. 23.(월)	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

## 5. 응시원서 접수

### 가. 원서교부

-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([www.kmst.go.kr](http://www.kmst.go.kr)) '알림바다 > 공지사항/ 채용정보'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(<http://gojobs.mopas.go.kr>)에서 내려받아 사용

### 나. 원서접수

- 접수 기간 : '26. 2. 24.(화) 09:00 ~ '26. 2. 26.(목) 18:00까지
- 접수 방법: 등기우편 접수

- ▶ 등기우편 접수주소 : (30121) 세종시 가름로 232,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,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지원팀 채용 담당자 앞(겉봉에 "응시 원서 재중" 표기)
- ▶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, 택배·퀵서비스 및 방문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- ▶ 기재사항 누락 및 제출서류 미비, 접수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## 6. 응시자 제출서류 안내

제출 시기	제출 서류
원서접수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입사지원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[붙임1]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참고</li> <li>▶ 주민등록 초본 1부(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</li> <li>▶ 속기사 자격증명서 사본</li> <li>▶ 관련분야 경력 사항 증빙 자료 사본 등(해당자에 한함)</li> <li>*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(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)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,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(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)</li> <li>▶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</li> </ul>
최종합격자 발표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채용후보자 등록원서,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, 공정채용 확인서, 채용신체검사서,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</li> <li>▶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</li> </ul>

\*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

## 7. 근무조건 및 보수

### 가. 근무조건

채용분야	계약기간	근무지	근무시간
기간제 근로자 (속기사)	'26. 3. 23. ~ '26. 8. 31. (약 6개월)	중앙해양안전심판원 (세종)	1일 8시간 주 5일 근무

나. (담당업무) 심판정 심문·변론 내용 등 음성 녹음 및 속기록 작성, 심판장 정리 및 심판 사전 준비, 기타 사무보조(부속실 비서 등)

### 다. 보수

- 기본급: 월 2,208,060원(속기사 1호봉 기준)
- 정액 급식비: 월 160,000원
- 기타 수당: 법정 수당(연장, 야간, 휴일 근로 수당)

- ▶ 4대보험(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) 가입
- ▶ 보수 규정과 그 외의 사항은 「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등 근로자 운영지침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

## 8. 응시자 유의사항

-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,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
-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,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 시,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 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됨
-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-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\* 지참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  - \* 기간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(사진포함, 유효기간 내)
-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통보 및 안내 예정
-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 담당자(044-200-6223)에게 전화 문의

<붙임 1>

**응시자 제출서류 목록(속기사)**

성 명	응시 분야	비 고
	기간제근로자(속기사)	

< 작성목록(총괄표) >

-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계 등으로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
(스테이플러 사용 금지)
- 내용을 작성·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“○, ×” 표시
- 증빙 서류 미제출 시 경력·자격증 등 불인정

목 록	작성 여부
1.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(필수)	
2. 응시원서(필수)	
3. 자기소개서(필수)	
4. 지원서(필수)	
5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필수)	
6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필수)	
7. 속기사 자격증명서 사본(필수)	
8. 경력사항 증빙 서류(해당자에 한함)	



## 응시원서 작성요령(공통)

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(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)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
1. 응시분야 : 채용예정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
2. 성 명 : 한자(漢字)는 정자로 기재
3. 생년월일 :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
4. 주 소 :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
5. 연 락 처 :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

「※」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.

<붙임 3>

## 자 기 소 개 서

◎ 자기소개서 (지원직종 직무기술·직무능력 포함 작성)

(유의사항)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, 가족관계(학력, 지위, 재산) 등의 사항과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서 수집·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·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○ 작성요령

-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,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
· 글씨크기 12, 줄간격 150mm,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5mm, 머리말,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

<붙임 4>





<붙임 6>

**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**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<p>1. <u>공직자로 재직</u>한 경험이 있는지                 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                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2. '<u>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</u>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                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               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                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된 사실이 있는지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                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u>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               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<u>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u>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<u>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</u>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6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생년월일            .            .            .

지 원 자

(서명)